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51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김우영 · 이언주 · 한준호
최혁진 · 박민규 · 조계원
김문수 · 진성준 · 김남국
황정아 · 이주희 · 이정현
이광희 · 김 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국가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지식창출과 함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경제적 성과로 확산하여 이를 다시 후속 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 정부의 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은 대가 없는 출연방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더라도 그 성과를 함께 향유하고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여 성과의 공유와 회수·재투자가 가능한 출자 방식의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출연 방식 중심의 관리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

진을 위한 출자 방식, 기금의 출자, 출자금의 사용, 제재처분 특례, 성실수행 담당자의 면책 등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신설함으로써,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형 연구개발법인’, ‘연구개발투자조합’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출연 방식에 적합한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선정, 평가, 연구비 사용, 성과활용, 기술료, 3책5공 등의 규정은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조).

다.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금의 출자와 재투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출자금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제재사유가 발생하면 참여제한과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라.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담당자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근거를 규정함(안 제36조의2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 지원 성과를 회수 및 재투자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1. “투자형 연구개발법인”(이하 “연구개발법인”이라 한다)이란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2. “연구개발투자조합”이란 연구개발법인에 투자를 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2장 및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다음에 제2장의2(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법인에 출자하는 방식
2. 연구개발법인에 투자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연구개발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방식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법인, 연구개발투자조합으로 하여금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법인 또는 연구개발투자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의 협약 내용에 따라 연구개발법인에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연구개발법인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결과를 확정할 때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기금의 출자) ①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법인 또는 연구개발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회수금, 이자, 배당, 그 밖에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의4(출자금의 사용) 제18조의2제1항의 방식으로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개발법인 및 연구개발투자조합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5(제재처분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법인,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연구개발법인 소속 임직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2.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자금 또는 투자금을 이 법 또는 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4.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5. 특별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 및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 별 참여제한 및 환수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제32조”를 “제18조의5 및 제32조”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면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공무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투자형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공무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이 이 법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의2.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u> <u>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u> <u>지원 성과를 회수 및 재투자하는</u> <u>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u> <u>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제1항 각</u> <u>호의 방식으로 예산 또는 기금으</u> <u>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u> <u>을 말한다.</u>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1. “투자형 연구개발법인”(이하 “연</u> <u>구개발법인”이라 한다)이란 투자</u> <u>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u> <u>기관으로서, 「상법」 제169조에</u> <u>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u>
<u><신 설></u>	<u>12. “연구개발투자조합”이란 연구개</u> <u>발법인에 투자를 하는 조합으로서,</u> <u>「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u> <u>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u> <u>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u> <u>을 말한다.</u>

제3조(적용 범위)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3조(적용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2장 및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의2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법인에 출자하는 방식

2. 연구개발법인에 투자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연구개발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방식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법인, 연구개발투자조합으로 하여금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법인 또

는 연구개발투자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의 협약 내용에 따라 연구개발법인에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연구개발법인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중앙행정

<신 설>

<신 설>

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결과를 확정할 때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기금의 출자) ①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법인 또는 연구개발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회수금, 이자, 배당, 그 밖에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의4(출자금의 사용) 제18조의2제1항의 방식으로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개발법인 및 연구개발투자조합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연구

<신 설>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5(제재처분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법인,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연구개발법인 소속 임직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2.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자금 또는 투자금이 이 법 또는 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거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출하는 행위

4.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전 승인
을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성
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5. 특별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
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행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 및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 및 환수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
---제18조의5 및 제32조-----

수 있다.

② ~ ⑧ (생략)

<신설>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면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공무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공무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이 이 법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